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2
----------	-----

2018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현찬 의원(찬성자 14명)
나. 제안일 : 2018년 10월 11일
다. 회부일 : 2018년 10월 29일
라. 상정일 : 제28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현찬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명·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 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8.11.1.~11.8)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실행 방안 강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2조의2 신설), 시민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 의무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제7조(<u>이용자의 손해배상</u>)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p>제7조(<u>이용자의 의무</u>)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p>

○ 평생교육국은 추진계획(2012.11.)과 조례 제정(2013.05.)을 근거로 가족 자연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왔으며, 2018년 현재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개소(횡성별빛마을, 포천자연마을, 제천하늘뜨레, 철원평화마을, 서천금빛노을, 함평나비마을, 봉화솔향가득)의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시설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현황 〉

구 분	횡성 별빛마을	포천 자연마을	제천 하늘뜨레	철원 평화마을	서천 금빛노을	함평 나비마을	봉화 솔향가득
데크 수	20면	25면	20면	25면	15면	20면(오토)	20면(오토)
수용인원	80명	100명	80명	100명	60명	80명	80명
최초개장	'13. 7. 6	'14. 7.19	'15. 9.25	'16. 6.25	'17. 4.29	'17. 3.18	'18. 6.29
교실	바둑실, 독서실, 나무블록체험실, 시청각실,	바둑실, 독서실, 시청각실,	바둑교실,	바둑·독서실, 유아놀이방	바둑·독서실, 유아놀이방	바둑·독서실 유아놀이방	바둑·독서실 유아놀이방
운동시설	탁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2면	탁구장/족구장/ 배드민턴장 1면	탁구장/족구장/ 배드민턴장 2면	-	탁구장/족구장/ 배드민턴장 2면	탁구장, 당구장	탁구장, 당구장
안전관리	CCTV 4대						
상하수도	지하수				상수도		
전기시설	20kw	25kw	22kw	25kw	20kw	30kw	30kw
화장실	2동 (남1, 여1)						4동 (남2, 여2)
취사시설	화덕, 테이블						
소화기	25개 (데크20,교실5)	30개 (데크25,교실5)	24개 (데크20,교실4)	30개 (데크25,교실5)	16개 (데크15, 관리동1)	25개 (데크21,교실4)	28개 (데크20,교실8)
방송장비	앰프, 마이크, 스피커						
안전계시물	현수막,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대피공간	학교교실			학교교실, 방공호	쌀문화센터	학교교실	
진입로	콘크리트 (폭4m 양방10m)	아스콘 (폭4m 양방10m)	아스콘 (폭4m 양방10m)	콘크리트 (폭7m 양방10m)	콘크리트 (폭3m 양방10m)	아스콘(폭4m)	마사토(폭6m)
주차시설	20대	25대	20대	26대	18대	23대	20대
기 타	관리사무실 안전펜스					관리사무실	

〈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건수 〉

(단위 : 건)

구분	계	횡성	포천	제천	철원	서천	함평	봉화
2018년(3~9월)	6,706	1,279	1,413	869	794	756	1,075	520
2017년	7,283	1,532	1,740	1,102	916	923	1,070	미개장
2016년	4,846	1,560	1,602	1,128	556	미 개장		

- 안 제2조의2제1항은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제2항은 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매년 초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마와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6월경 종합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음.
- 안 제2조의2제1항은 이러한 운영계획과 시설점검계획을 시장의 의무로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2조의2제2항은 운영 및 안전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시설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평생교육국은 안 제1항 중 “정책” 용어를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쓰는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용어상 분별의 의미가 얼마나 클 것인지, 자연체험시설에 대한 큰 틀의 정책방향 수립이 아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운영계획 및 시설점검계획 수립에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 의견 〉

개정안	검토의견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 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 안 제7조는 조 제목을 ‘이용자의 손해배상’에서 ‘이용자의 의무’로 변경하고,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재까지 시민들의 부주의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시설의 훼손 또는 장비의 분실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의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족자연체험시설 시설 개보수 현황 〉

(단위 : 천원)

시설명	보수시기	주요 개·보수 내용	소요비용
횡성	’18. 3월	▪ 데크 확장 보수	838
함평	’18. 4월	▪ 텐트 구조 보강을 위한 데크 보수	1,175
봉화	’18. 5월	▪ 소화펌프 및 오수처리시설 보수	5,300
	’18. 6월	▪ 안전 펜스 설치	8,590
철원	’18. 7월	▪ 옥상 방수 공사	3,173

- 안 제7조제2항은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선량한 의무 이행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조문 중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의 의미는 현행 제1항에서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엄격한 과실책임주의¹⁾에 대해 예외적 상황에서 의무를 다한 이용자의 면책 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짐.

1)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加害行為)의 책임을 진다는 주의.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 시민들이 아무리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시설·장비의 파손 또는 장비의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억울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긴급 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손해배상의 예외적인 경우로 두었음.
 - ※ 또한, ‘임의로 훼손’하는 상황을 명시하여 ‘고의에 의한 행위’와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를 구분하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시설 이용자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 현행 조례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지에 관점이 맞춰져 있어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파손·분실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으로 「민법」²⁾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짐.
- ※ 시민들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면, 손해배상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시설이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자유로운 활동과 휴식 등 본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임.
- 다만, 입법기술적으로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선량한 의무 이행을 먼저 규정(이용자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 후단의 단서로 규정(다만,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명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본 개정안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 또는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시설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면제되는바, 시민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52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1일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1명)

찬 성 자 : 유 용, 이광호, 김상진,
한기영, 이병도, 봉양순,
경만선, 박상구, 강동길,
김호평, 김경우, 이동현,
김제리, 송재혁 의원(14명)

1. 제안이유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명·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 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은 “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목인 “이용자의 손해배상”은 “이용자의 의무”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사용료의 감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7조(<u>이용자의 손해배상</u>)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4조(사용료의 감면)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제7조(<u>이용자의 의무</u>) ① <u>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u></p> <p>② <u>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u></p>